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27호 2020. 2. 10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2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3

공 고

- 목포시 택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----- 5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0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고시 제 2020-51 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02월 10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70번길 12	2020.02.10	건물신축으로 기존 건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3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목포시 고시 제 2020-52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02월 10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	불 임 참 조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78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[붙임]**도로명주소 폐지 조서**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일	도로명주소의 폐지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2	2020.02.10.	건물 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로30번길 9	2020.02.10.	건물 멸실
3	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언덕로10번길 5-2	2020.02.10.	건물 멸실
4	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언덕로10번길 7	2020.02.10.	건물 멸실
5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10-1	2020.02.10.	건물 멸실

목포시 공고 제 2020 - 171호

「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정안

「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2월 10일

목 포 시 장

1. 제정이유

- 목포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쉼터 소재지(안 제1조~제3조)
- 택시쉼터의 운영 및 위탁 방법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택시쉼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택시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3. 관련 법규
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7조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

4. 제정조례(안)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02. 10. ~ 03. 02.(21일간)**6. 의견 제출**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교통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:[우530-701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교통행정과)]

7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통행정과(☎ 061-270-3328, FAX 270-35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☐ 조 례 명 : 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목포시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택시운수종사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택시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”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, 회의,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소재지) 쉼터의 소재지는 목포시 죽교동 620-24 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 및 위탁) ①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(09:00~18:00)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

탄력적으로 조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) 사용자는 택시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택시쉼터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
2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
3.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

제7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목포시 공고 제2020 - 183 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』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2. 10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찾아가는 보건·복지 서비스」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·마을자치 인력을 확충하고,
- 정부 ‘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’에 따라 정부정책 및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의 총수(안 제2조) : 1,259명 → 1,296명(⊕37명)

-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인력 : 24명(행정 22명, 사회복지 2명)
- 재난안전 전담 인력(상황실 운영) : 1명(방재 1명)
-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 인력 : 1명(간호 1명)
-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 : 1명(행정 1명)
- 공무원(비공무원) 대응 전담 인력 : 1명(행정 1명)
- 아동학대 현장조사 전담 인력 : 9명(사회복지 9명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(안 제4조, 별표 3)

(단위 : 명)

구 분		현행						조정					
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 계		1,259	1,259					1,296 ($\oplus 37$)	1,296 ($\oplus 37$)				
정무직		1	1					1	1				
일반직	소계	1,238	1,238					1,275 ($\oplus 37$)	1,275 ($\oplus 37$)				
	3급	1	1					1	1				
	4급	9	4	1	1	3		9	4	1	1	3	
	5급	68	24	3	3	15	23	68	24	3	3	15	23
	6급 이하	1,160	1,160					1,197 ($\oplus 37$)	1,197 ($\oplus 37$)				
연구직	연구사	17	17					17	17				
지도직	지도사	3	3					3	3				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

6. 규제심사(심의) 대상여부 검토 : 없음

7. 예산사항

구 분	증감인원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계	37	37		1,445,217,500	
8급	1	1	43,274,180	43,274,180	3호봉
9급	36	36	38,942,870	1,401,943,320	1호봉

8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2. 10. ~ 2. 24.(14일간)

9. 사전협의(승인)사항

- 행안부 지방분권과-165(2017.8.10.)호, 도 자치행정과-8004(2017.06.12.)호 :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 분야별 지역현안 수요
- 행안부 자치분권과-501(2017.09.11.)호, 도 자치행정과-10978(2017.08.11.)호 :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 이행계획
-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-1980(2019.06.25.)호, 도 자치분권과-6676(2019.06.27.)호 :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충원 계획
-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-3069(2019.10.04.)호, 도 자치행정과-3206(2019.10.08.)호 :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

10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[우 58613,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자치행정과)]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 061-270-3439, FAX 270-87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1,259명”을 “1,29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36명”을 “1,27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3〕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 계	1,296	1,296				
정무직계	1	1				
정무직	1	1				
일반직계	1,275	1,275				
3급	1	1				
4급	9	4	1	1	3	
5급	68	24	3	3	15	23
6급이하	1,197	1,197				
연구직계	17	17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7	17				
지도직계	3	3				
지도관						
지도사	3	3	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조(공무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수는 <u>1,259명</u> 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2조(공무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296명</u>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36명</u>		1. ----- <u>1,273명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(생략)		2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[별표 3]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 기관별 직급별 </th><th>총계</th><th>본청</th><th>의회</th><th>직속 기관</th><th>사업소</th><th>동</th></tr><tr><td>총계</td><td><u>1,259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259</u></td></tr><tr><td>정무직계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시장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계</td><td><u>1,238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238</u></td></tr>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9</td><td>4</td><td>1</td><td>1</td><td>3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68</td><td>24</td><td>3</td><td>3</td><td>15</td><td>23</td></tr><tr><td>6급 이하</td><td><u>1,160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160</u></td></tr><tr><td>연구직계</td><td>17</td><td colspan="5">17</td></tr><tr><td>연구관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연구사</td><td>17</td><td colspan="5">17</td></tr><tr><td>지도직계</td><td>3</td><td colspan="5">3</td></tr><tr><td>지도관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지도사</td><td>3</td><td colspan="5">3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총계	<u>1,259</u>	<u>1,259</u>					정무직계	1						시장	1	1					일반직계	<u>1,238</u>	<u>1,238</u>					3급	1	1					4급	9	4	1	1	3		5급	68	24	3	3	15	23	6급 이하	<u>1,160</u>	<u>1,160</u>					연구직계	17	17					연구관							연구사	17	17					지도직계	3	3					지도관							지도사	3	3					<table><tr><th> 기관별 직급별 </th><th>총계</th><th>본청</th><th>의회</th><th>직속 기관</th><th>사업소</th><th>동</th></tr><tr><td>총계</td><td><u>1,296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296</u></td></tr><tr><td>정무직계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시장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계</td><td><u>1,275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275</u></td></tr><tr><td>3급</td><td>1</td><td>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4급</td><td>9</td><td>4</td><td>1</td><td>1</td><td>3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68</td><td>24</td><td>3</td><td>3</td><td>15</td><td>23</td></tr><tr><td>6급 이하</td><td><u>1,197</u></td><td colspan="5"><u>1,197</u></td></tr><tr><td>연구직계</td><td>17</td><td colspan="5">17</td></tr><tr><td>연구관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연구사</td><td>17</td><td colspan="5">17</td></tr><tr><td>지도직계</td><td>3</td><td colspan="5">3</td></tr><tr><td>지도관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지도사</td><td>3</td><td colspan="5">3</td></tr>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총계	<u>1,296</u>	<u>1,296</u>					정무직계	1						시장	1	1					일반직계	<u>1,275</u>	<u>1,275</u>					3급	1	1					4급	9	4	1	1	3		5급	68	24	3	3	15	23	6급 이하	<u>1,197</u>	<u>1,197</u>					연구직계	17	17					연구관							연구사	17	17					지도직계	3	3					지도관							지도사	3	3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<u>1,259</u>	<u>1,25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<u>1,238</u>	<u>1,238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9	4	1	1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8	24	3	3	15	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1,160</u>	<u>1,16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계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계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<u>1,296</u>	<u>1,29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<u>1,275</u>	<u>1,27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9	4	1	1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8	24	3	3	15	2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1,197</u>	<u>1,19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계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17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계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3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비용소요 추계서 (1)

1. 관련 법규명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-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기 구 : 변동 없음
-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

구 분	증감인원	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계	9급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증원	36	36	36	38,942,870	1,401,943,320	1호봉

3. 비용 소요 내역

(9급 1호봉 기준)

구 분	소요비용(원)	산 출 근 거	비고
총 계	38,942,870		
○ 인건비	28,529,870		
- 기본급	19,713,600	1,642,800원*12월	
- 수당	8,816,270		
• 정액급식비	1,680,000	140,000원*12월	
• 명절휴가비	1,971,360	1,642,800원*60%*2회	
• 연가보상비	941,870	1,642,800원*86%*1/30*20일	
• 시간외수당	4,223,040	8,798원*40시간*12월	
○ 직급보조비	1,740,000	145,000원*12월	
○ 이전경비	8,673,000		
- 성과상여금	2,451,680	2,228,800원*110%	
- 연금부담금 등	5,018,21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15.3361%	
- 국민건강보험금	1,091,26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3.335%	
- 장기요양보험금	111,850	(건강보험금*10.25%)	

4. 작성자

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

비용소요 추계서 (2)

1. 관련 법규명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-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기 구 : 변동 없음
-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

구 분	증감인원	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계	8급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증원	1	1	1	43,274,180	43,274,180	3호봉

3. 비용 소요 내역

(8급 3호봉 기준)

구 분	소요비용(원)	산 출 근 거	비고
총 계	43,274,180		
○ 인건비	31,737,470		
- 기본급	22,117,200	1,843,100원*12월	
- 수당	9,620,270		
• 정액급식비	1,680,000	140,000원*12월	
• 명절휴가비	2,211,720	1,843,100원*60%*2회	
• 연가보상비	1,056,710	1,843,100원*86%*1/30*20일	
• 시간외수당	4,671,840	9,733원*40시간*12월	
○ 직급보조비	1,740,000	145,000원*12월	
○ 이전경비	9,796,710		
- 성과상여금	2,883,430	2,621,300원*110%	
- 연금부담금 등	5,576,34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15.3361%	
- 국민건강보험금	1,212,64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3.335%	
- 장기요양보험금	124,300	(건강보험금*10.25%)	

4. 작성자

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1,445,217	1,445,217	1,445,217	4,335,651
인 건 비		1,445,217	1,445,2176	1,445,217	4,335,651
세 출		1,445,217	1,445,217	1,445,217	4,335,651
인 건 비		1,445,217	1,445,2176	1,445,217	4,335,651
재원 조달		1,445,217	1,445,217	1,445,217	4,335,651
의존 재원	소 계	1,445,217	1,445,2176	1,445,217	4,335,651
	보조금	-	-	-	-
	지방교부세	1,445,217	1,445,2176	1,445,217	4,335,651
자체 수입	소 계	-	-	-	-
	지 방 세	-	-	-	-
	세외수입	-	-	-	-
지 방 채		-	-	-	-
기 금		-	-	-	-
특별회계	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

【 관계법령 발췌서 】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24조(정원의 관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 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- 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